

주주 귀하

제8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8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동법시행령 제31조의 ①, ②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전자공시시스템) 함으로써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6일(목요일) 오전 09:00
2. 장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2로 41 제천바이오센터 대강당 1층
3. 회의목적사항
 - 1) 보고안건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① 1주당 배당금액 : 보통주 - 현금 210원
 - 1우선주 - 현금 220원
 - 2우선주 - 현금 220원
 - ※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진행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1명)
유승필 : 재선임(사내이사)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0년 03월 16일 ~ 2020년 03월 25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2020년 3월



(주)유유제약



대표이사 유 원 상(직인생략)

정관 일부 변경 (안)

현 행	변 경(안)	비 고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 로 한다.	문구 수정
제9조 【신주인수권】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 1호, 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 1호, 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추가
제11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추가
제13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가액 중 29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3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문구 수정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9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 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문구 수정
제24조 【결의권의 불통일행사】	제24조 【 의결권 의 불통일행사】	문구 수정
제3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방법】	제3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방법】 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구 신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2.감사위원 동의를 있을 때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2.감사위원 전원 의 동의를 있을 때	문구 추가
	이 정관은 8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이사 선임의 건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추천인	주 요 약 력	회사와의 최근3년간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비 고
사 내 이 사	유승필	1946-09-23 이사회	컬럼비아대(미국) 경영대 학원 석사 現 (주)유유제약 대표이사 회장	없 음	최대주주	재선임

※ 정기주주총회장 약도

- 대중교통: 제천역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도착 후 택시 이용
- 자가용: 서울->중앙고속도로->제천IC(제천, 충주방면)->5번국도->제천교차로(우측 단양방면)
->남부순환로->충북테크노파크제천바이오센터 대강당(1층)

찾아오시는길

